

포항시창조경제국 종합감사
(2015. 9. 3 ~ 9. 16)

감사결과 공개문

제 목 선진어업현장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또한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피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선진어업현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일선어업지도자 선진어업 현장견학여비 견학여비 ★,★★★천원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표)와 같이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통장에 일괄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일선어업지도자 선진어업 현장견학 경비 지원

일자	참가인원	견학장소	여비지급액	지급처
20××.××.××	★★명	제주도	★,★★★천원	○○○수산업협동조합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느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작성 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의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2조(계산서의 제출)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130조(지출계산서), 제132조(출납계산서)에 의하면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 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4분기부터 20××년 3분기까지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20××년 4분기부터 20××년 2분기까지 출납계산서를 미작성 및 미제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어항관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포항시어항관리조례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시장은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동 조례 제35조에 시장은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해당부서장은 포항시어항관리조례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를 20××.××.× 구성한 이후 한번도 어항관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 20××.××.×× 어항관리협의회 위원(변경)위촉을 하는 등 어항관리협의회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어항관리조례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조치 미이행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업무 추진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청구액과 포인트 발생액을 해당 카드사로부터 매월 통보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포항시청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라 발생한 모든 포인트는 당해연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2012년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한번도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천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천원을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용역(버스임차)계약서 작성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 물품구매 및 임차시 구입및용역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 쪽에는 반드시 승낙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승낙사항을 날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용역(버스임차 등)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용역일시, 과업 내용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할 경우 공사·용역·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그런데도 ○○○○과, ○○○○○○과에서는 버스(임차)계약시 임차일, 운행구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에도 임차일, 운행구간 등 을 미기재하는 등 ★★건의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은 버스(임차)계약시 계약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축제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내 용

- ○○○○과에서는 국내최대의 문어생산지인 호미곶면을 대내외에 알리고 돌문어 소비촉진을 위한 ○○○ ○○○축제를 위해 매년 ○○○○○○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토록 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시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시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계좌입금하고 송금내역서 원본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전에 보조금 전용통장 및 자부담 예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단체에 대한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보조금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축제위원회에 20××.××.××.에 민간행사보조금 ★,★★★천원을 교부한 후, 20××.××.××.에 민간경상보조금 ★,★★★천원을 같은 내용으로 교부함으로써 동일행사에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요경비의 산출내역도 없는 축제계획(안)만으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자부담 예치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 보조금 정산시 교부내용과 다를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건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접수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집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1. 보조사업시행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 ○○○○과,
○○○○과,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및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 물품구매 및 임차시 구입및용역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중앙부분에 있는 “이면기재사항을 승낙함” 쪽에는 반드시 승낙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대상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승낙사항을 날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물품구매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액, 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가지급할 경우 공사·용역·구매 검사(수)조서(지출결의서 납품, 검수날인)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그런데도 ○○○○과 외 4개부서에서는 물품 구매 등 각종계약서 및 납품기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에도 납품기한 등 이면 승낙사항을 미기재, 도장날인을 누락하는 등 총★★건의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지방계약법, 재무회계규칙 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하자검사 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 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하자검사)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만료일 14일 이전부터 보증만료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검사 내용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외 3개부서에서는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연2회이상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 또한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품의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비목별 세부집행 지침에 의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품의는 각각 건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집행품의를 내고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을 총 ★★건 ★★,★★★천원(○○○○과 ★★건 ★,★★★천원, ○○○○과 ★★건 ★★,★★★천원을 월 일괄품의를 낸 후 직원급식제공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집행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상하수도행정과

내 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서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Ⅶ. 실비보상 등 3. 연가보상비에서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12개월 - 제외기간(개월)}÷12개월]에 따라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8조(연가일수) 및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 또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정직 및 강등의 경우에는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서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3개월)이 연가최대일수를 초과함에 따라 향수 연가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정직 등의 제외 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금 ★,★★★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 또한 해당부서에서 정직자 연가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정직기간이후 연가실시가 불가한 직원들에 대하여 결국으로 인하여 봉급액 ★★★천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은 연가보상비 집행시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 연가제외기간을 확인하는 등 연가보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천원(○○○○과 ★.★★★천원, ○○○○○과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일상감사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 미제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2012.4.23, 훈령제247호) 제4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에 의하면 물품은 추정금액 5백만원이상, 일반용역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1억원이상, 보조금은 1억이상이상일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동규정 제14조(일상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결과 통보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외 ★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통보에 따른 조치결
과를 미제출하는 등 일상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은 일상감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 ★★
★개소(무료 ★★ , 유료 ★★★)에 대하여 2012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연 1회 수시단속만을 실시,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1회이상 직업소개소 정기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세출예산(사무관리비) 목적외 사용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위로물품은 사무관리비로 쓸수 없다.
-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관련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설맞이 경로당 물품 구입 외 ★★건 (○○○○과 ★★, ○○○○○○과 ★★, ○○○○과 ★)에 대하여 총★,★★★천원(○○○○과 ★,★★★천원, ○○○○ ○○과 ★,★★★천원 ○○○○과 ★,★★★천원)을 세출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 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은 세출예산 목적외로 경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카드결제계좌 관리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카드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감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0.출납원 소관의 검사실시에 의하면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수시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결제예정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계좌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20××.×.××일 기준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과에서는 ○○○○과에서 오류입금한 ★★★천원을 포함하여 ★★★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하였으며,

- 또한, ○○○○과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까지 입금하지 않고 총 ★★회 지연처리함으로써 ★★천원의 연체이자분이 발생함에도 연체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으며, 예금이자 ★,★★★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과장은 카드결제계좌잔액 ★,★★★천원을 즉시 세입처리하시고,
2. ○○○○과장은 카드결제계좌잔액(예금이자포함) ★★★원과, 카드이용대금 연체이자금 ★★천원을 즉시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소비촉진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 96,000천원의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토록 하고 있고, 보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정산시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집행시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전에 보조금 전용통장 및 자부담 예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할시에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시 관련서류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건, 20××년 ★건의 수산물 소비촉진 보조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자기부담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함에도,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 ‘자매도시 및 코레일 역사 등 과메기 전국홍보행사’ 보조금은 행사기간이

20××.×.×.~20××.×.××.으로 20××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년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첨부한 채 계좌입금 처리하였는데도 정산완료처리 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1. 수산물관련 보조사업 집행시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회계연도 종료후 원인행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 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는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하며(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 입금)한다(지출)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 시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당해년도 12. 31.이전에 원인행위를 확정해야 하며 익년도 2월까지 출납 마감을 해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무실 운영용품 구입 등 ★건 ★,★★★천 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2013년12월31일이전에 원인행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를 종료 후 20××년 ×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계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1.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세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할계약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동일시기에 유사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분리 발주할 법적근거가 없는 한 물품·공사·용역의 성질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각각 유지보수 계약된 사항은 세입, 징수 등을 관리하는 유사한 시스템으로써 통합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같은 업체와 매년 개별 분리하여 부적정하게 분할 계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3호 규정에 따라 분장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는 가산금, 증가산금 징수 규정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경우 <법률 제11125호, 2011.12.31.>로 개정되어 해당 법률 조항은 삭제(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제86조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되어 2013. 1. 1.부터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과에서는 준용하는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준용규정이 삭제되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결손처분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태료 결손처분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공제금 미징수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등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규정에서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기간,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의 별지8호 서식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에서는 사용허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포항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포항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별지8호 서식에 따른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사용자로부터 포항시에서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게 허가한 재산에 대한 공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협회 등 ★건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면서 별지8호 서식에 따른 허가조건을 부여하지 않아 해당 공제금 총 합계 ★,★★★천원을 사용 허가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사용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기록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되도록 하였다.
- 같은 규칙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제4항 규정에서는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기록·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수산행정)을 활용하여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읍·면 포함)하여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하였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를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보시스템(수산행정)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읍·면 포함)하지 않고 개별 전산(엑셀)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어업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읍면 공문시달하여 전산기록할 것)

제 목 공유수면 점·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 미준수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규정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규정에는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20일의 범위의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를 준수하여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징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징수기한을 정하여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공유재산 점·사용료 징수시 징수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중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대부업 등록관리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외의 게시와 광고)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에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되도록 하였다.
- 따라서 ○○○○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사실 확인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서 정한 개별기준에 의거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한 공익신고(파파라치)제보로 인하여 민원야기 발생 및 과태료 체납발생 등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하여 과소한 행정처분을 하여 종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 8.22.)에 의거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21호,2015.06.22)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 그런데도 ○○○○과에서는 ‘○○상가 ○○○ 거리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외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의 내역서도 없이 견적서 등을 참조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각종 건설공사의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축공사 설계변경 및 정산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호 2015.1.1)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그런데도 ○○○○○○○과에서는 ○○○○○○○ 문화공원조성 건축공사를 (주)○○종합건설과 20××.××.××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 하면서 공중화장실 내역서에 명시된 내부수평비계와, 신라마을(초가집★동)등의 강관비계다리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내부수평비계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과 강관비계다리 중 일부 미설치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

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 문화공원조성 건축공사의 미설치한 내부수평비계 및 강관비계다리에 대한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문화공원조성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등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0조의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별표6의5 2항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문화공원조성 건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지 않았으며,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도급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즉시 제출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각종 건설공사 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기술지도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생태문화공원 경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 등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생태문화공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일위대가표의 작성상의 오류나 품셈적용상의 문제(누락, 과다·과소적용, 할증율 미적용이나 잘못 적용 등) 또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사유만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함에도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거푸집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단가를 변경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km에서 ★.★km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불가항목인 PE휀스,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정산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1. 과다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관광안내소 데스크 설치공사 정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관광안내소 데스크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가설파티션(81.6㎡) 및 합판 보양(42.82㎡)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과다 지급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 관광안내소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2012.07.30)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8호, 2012.9.22)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됨으로 인하여 용역의 과업내용이 증감 또는 변경되거나, 계약이행기간이 조정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KTX 포항역 관광안내소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III 과업의 일반 지침, (12) 설계변경 및 중지조건, 4) 설계용역 금액은 추정 공사비로 산정하였는바 설계 후 공사금액이 감되는 경우에는 정산처리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 관광안내소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정공사금액을 ★★*,★★*천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관광안내소 디자인을 과업내용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 용역결과 총공사금액 ★★*,★★*천원(부가세

별도)으로 관광안내소 디자인 성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용역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과다 지급한 용역비★★一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저탄소 콘텐싱 보일러 개선사업 보험료 정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2012.3.1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저탄소 콘텐싱 보일러 개선사업 보험료를 사후정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상에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사업비 353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과다 지급한 보험료 ★★★천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검토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면서 참여기술자 중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가 참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교육 이수여부 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건축공사 공사비 사용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지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2014.5.23.)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그런데도 ○○○○과에서는 도구해수욕장 바다시청 증축공사를 ○○종합건설(주)과 20××.×.××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비 내역의 가설공정 중 건축물 현장정리에는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 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환경보전비 ★★★천원을 청소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과다 지급한 환경보전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사업 제경비 정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준공 시 납부 및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비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과메기연구 및 홍보센터건립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계약 체결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별표6의5 2항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과메기연구 및 홍보센터건립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기술지도 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일상감사(중간검사) 미 이행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현 황】

-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제2조에서 " 일상감사 " 란 제4조(별표,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중간검사, 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 말하며, 제7조(중간검사)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중 공사비 교부결정액 1억원 이상 중간검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대상사업이 완료되기 전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과메기 연구 및 홍보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과메기 연구 및 홍보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혼합골재와 쇠석자갈을 경제성 및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조기층재로 적합한 슬래그로 변경하여 공사비 ★,★★★천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메기 연구 및 홍보센터 건립공사의 보조기층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